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54호

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「연안시설 설계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5월 2일

해양수산부장관

1. 기준명 : 연안시설 설계기준

2. 구 분 : 제정

3. 제정 목적

- 연안시설 기술발전과 경쟁력의 제고, 시설물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하여,
- 경제적이고 안전한 연안시설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환경 친화적이며, 미래 지향적인 설계기준을 제정하여 기술기준의 선진화 도모

4. 주요 제정내용

- 연안시설 설계기준은 총 본문 4장과 부록 4편으로 구성
- 제1장 일반사항
 - (적용범위) 「연안관리법」, 「항만법」, 「어촌·어항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연안시설에 적용하도록 하며, 방조내 수면 매립호안 등도 포함
 - (설계원칙) 연안시설의 형상과 구조 및 위치는 시설의 목적과 기능 및 성능 적합성, 연안기능의 다양성, 환경보전, 주변경관과의 조화,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해안의 침수 혹은 침식이력과 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연안수리·퇴적현상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하도록 함
- 제2장 설계조건 및 계획
 - 설계조건 및 계획에서는 조위, 파랑 등 외력작용에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연안시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시설배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함
 - (설계외력) 조위, 폭풍해일, 바람, 파랑, 흐름, 표사, 해빈형상, 지반, 토압, 수압, 지진, 환경과 이용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함
 - (조위) 설계조위는 연안시설의 배후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안관리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며,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함
 - (파랑) 파랑은 원칙적으로 불규칙파를 이용하여 검토하고 불규칙파의 대표파고 및 주기는 유의파고 및 유의파주기로 함
 - (지진(내진)) 연안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지진에 의한 피해를 제어하여 기능회복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함
 - (계획)시설배치)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효과적으로 배치, 복수의 연안보전시설을 조합시킴으로써 연안을 보전하는 복합방호방식을 적용
 - (계획)유지관리) 설계공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 및 요구성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유지관리를 고려하도록 함
- 제3장 재료
 - 콘크리트는 해수의 화학적 및 물리적 작용, 파랑에 의한 충격, 철근의 부식과 기타 유해한 작용에 저항하기 위한 내구성, 소요 품질을 가진 것 등을 이용하도록 함
 - 강재는 한국산업표준(KS)에 규정되어 있는 강재를 사용하고, 부식되지 않도록 방식대책을 강구하도록 함

○ 제4장 설계

- 설계는 시설물별로 호안·제방, 돌제, 이안제, 잠제·인공리프, 소파제, 사빈(양빈), 부대시설로 구분하여 기준을 마련함
- (호안·제방) 해수, 설계파, 지진 등 기타 외력작용에 대해 안전한 구조로 하고, 설계조위를 넘는 해수 및 이상파랑의 작용에 대해 배후지의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호안의 손상 등을 경감하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함
- (돌제) 해안 침식의 방지, 해안을 유지·복구시키는 기능, 적절한 표사제어 성능을 갖도록 하고 파랑, 토압 및 세굴 작용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함
- (이안제) 해안 배후의 인명·자산을 해일 및 파랑으로부터 보호, 해안침식의 방지·경감 및 해빈의 안정화를 꾀할 목적으로 설치하도록 함
- (잠제·인공리프) 파의 에너지를 저감시켜 월파를 감소시키는 기능, 표사를 제어해서 해안선을 유지하거나 복구시키는 기능을 갖도록 설계 등
- (소파제) 해안의 침식 방지·경감을 통해 해빈·해식에 호안을 보호하거나 월파저감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해안선 부근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함
- (사빈(양빈)) 방호 상의 기능 외에도 환경 상의 기능, 이용 상의 기능을 가지고, 해안에 인공적으로 모래 등을 공급하여 해빈을 조성하도록 설계 등
- (부대시설) 수문, 통문, 통관, 배수펌프장, 육갑문, 비사·비말방지시설, 관리용 통로 및 승강로 등에 설계하도록 기준을 마련함

5. 관련단체 : 한국항만협회(☎ 02-2165-0094, <http://www.koreaports.or.kr>)

6. 설계기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

- 이 ‘연안시설 설계기준’ 제정 관보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연안시설 설계기준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항만협회(☎ 02-2165-0094)로 문의하여 주시고, 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(www.mof.go.kr)와 국가건설기준센터(www.kcsc.re.kr)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